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 대응 시 사용된 공무원 개인차량 등 손실보전 근거 마련〉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30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개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4.
3. 회부연월일 : 2026.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대처를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임. 이들 공무원들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동대처와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현장 대응을 하다가 파손·유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에 대한 보상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난 현장에서 대응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 83조의2).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재 공무원이 재난 대응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소유 자동차 등을 직무수행에 사용하였다가 파손·유실 등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83조의2(공무수행 관련 손실보전)</u> <u>① 공무원이 재난 대응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신의 소유 자동차 등을 직무수행에 사용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의 피해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한다.</u>

2. 검토의견

각종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긴급한 상황 시 공무원이 차량 등의 개인 소유물을 이용하여 현장 대응을 하는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파손·유실 등 물적 손실이 발생하여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현재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손실보상 등의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에서는 경찰관 또는 소방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실 등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 이는 국민에 대한 손실보상에 의의가 있는 제도로 공무를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생략)

집행하는 공무원은 주요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음.

다음으로, 공무 집행의 주체인 공무원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는 공무수행 관련 소송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²⁾와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 지원 및 직무 관련 행위에 대한 책임의 감면³⁾ 등이 있는데, 해당 제도는 공무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이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신체적 손상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중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생략)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이하 생략)

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3) 개별 법률에서 소송 지원이나 면책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한 사례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소송 지원),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소송지원),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이 있음.

하고 있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무원 개인의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차량 등 개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은 대처는 적극행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공무원 개인이 전적으로 지도록 할 경우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나 신속한 조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⁴⁾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난 대응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직무수행에 사용된 개인 소유 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재난 대응을 유도하고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음.

다만, 현행법은 공무원의 퇴직 및 장해·사망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전을 규정하려는 개정안과 목적 및 규율 대상에 차이가 존재하고,⁵⁾

4) 폭우 속 공무로 공무원 차량 18대 침수 피해...당진 시의회는 이 같은 경우에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건의안 채택 (당진신문 등, '25.9월)

5) 「공무원연금법」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 등에 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⁶⁾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현행법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관리기금 현황》

□ 개요

- 종전 개별법상의 기금('67년 재해대책기금, '98년 재난관리기금)을 '04년 「재난안전법」상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일원화

□ 적립·관리 주체: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각 지자체는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함
 - * (재난안전법상 제67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
- '25.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5조 원의 기금이 조성됨

□ 사용 용도

- 매년 적립액의 일정 비율(적립액의 약 21%)은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에 우선 사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 지자체가 수행하는 재난관리 활동 중 조례로 정한 사무
- 재난 관련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항

자료: 인사혁신처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이므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재원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현행법이 개정 대상 법률로서 적절한지 여부와 함께 재난관리기금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공무원 보험과의 연계 등 다른 정책적 대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 중 공무원이 입은 자동차 등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에 재난과 관련 피해보상 근거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비롯한 재난 관계 법령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입법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여 활용하는 재원으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재난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